

기타 참고 사항

• 총중량 20톤 초과 사업용 대형차량 화물·특수 유형별 구분

유형	정의	예시	장착 대상
일반형	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	카고트럭	○
덤프형	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중력에 의하여 쉽게 미끄러뜨리는 구조의 화물운송용인 것	덤프트럭	×
벤형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인 것	벤형	○
특수 용도형	특정한 용도를 위해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화물운송용인 것	원바다, 냉동탑차, 진개덤프, 할러차 등	○
견인형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 것	트랙터	○
구난형	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견인할 수 있는 구조인 것	렉카차	○
특수 작업형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작업용인 것	아쌈질차, 고소작업차 등	○

※ 세부유형별 구분은 차량 제원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지원 사업 적합제품 현황

장치제작사	모델명	제품문의전화
(주)대성엘텍	DI-B41700	1588-0340
모바일어플라이언스(주)	A-300	031-421-8071
모본 주식회사	MDAS-9	02-2050-4600
	MDAS-5P	
모빌아이	Mobileye Pro	031-404-5836
	Mobileye 630	-
JIMU	SR-600	1800-7970
(주)씨스	ESSYSMAN	031-215-0907
(주)에이다스원	HM310	02-2279-1400
	HM320	
(주)큐알온텍	LK-939SAD	02-2093-1252
(주)크린어스	LK-939SAD	02-2093-1252
팅크웨어(주)	ADDEYE	031-627-2900
(주)피엘케이테크놀로지	로드스큐프7	1899-4610
	로드스큐프8	
타타대우상용차주식회사	Control Unit A-FCW&LDW	-

※ 2019년 6월 말 기준 장치 적합제품 현황이며, 위 제품 외 적합 제품이 추가 될 수 있으니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www.kotsa.or.kr)참고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시험기관에 인증을 받지 않은 차로이탈경고장치에 대한 보조금 지원 유무와 과태료 부과 여부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제품 규격을 시험기관*에서 인증한 장치에 한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외는 지원 대상이 아님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다만, 해당 제품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의29에 따른 차로이탈경고장치의 기준을 만족하면 과태료 대상은 아님(제품의 기준은 제조사에 문의)

Q 청소용 차량(일명 진개덤프), 카고덤프 등의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청소용 차량(일명 진개덤프), 카고덤프 등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분류되어 장착 대상 및 보조금 지급 대상임(다만, 총중량 20톤 초과 차량만 대상임)

Q 일반용(자가용) 흰색 번호판이 총중량 20톤 초과할 시에도 의무 장착 대상인지, 미장착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대상 및 보조금 지급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임

따라서, 노란색 번호판인 사업용 화물차량만 그 대상이 되며, 흰색 번호판인 화물차량은 대상이 아님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안전속도 50 30

정부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지원 사업 안내

정부에서는 사업용 대형버스, 화물·특수 자동차에 대해 전방 충돌경고기능이 포함된 차로이탈 경고장치 부착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정부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지원 사업

보조금의 집행기준 및 절차

업무처리지침 주요 변경 내용 ('19.6.3 기준)

개요

최근 인적요인(졸음운전 등)에 의한 교통사고가 지속 발생되고 사고 피해규모를 줄일 수 있는 첨단장치가 개발됨에 따라 사업용 대형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 됨

지원근거

- 「교통안전법」 제9조(재정 및 금융조치) 및 제55조의2(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 지원)

*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지원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2019.6.3.)

사업계획

- 사업명 :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사업
- 지원대상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 2017년 7월 18일(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조 시행일) 이후 장착한 경우에 한함(단,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설치된 차량은 제외)
- 사업기간 : 2018년 ~ 2019년 (2년간)
- 사업비 : 총 600억원 (국비 300억, 지방비 300억)
 - ※ 예산범위 내 지원 가능

보조금 지원대상 장치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지원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물리 및 성능규격 시험에서 적합제품을 받은 장치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www.kotsa.or.kr)

보조금의 산정기준

(단위 : 원)

구분	지원금액 한도 ¹⁾
차로이탈경고장치(부착비 포함)	최대 400,000

※ 보조금은 장치원가와 장착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됨 (부가세포함)

차로이탈경고장치에 대한 지원 금액은 해당 장착비용(장착원가 및 장착에 소요되는 비용 합계) 중 80%* 기준임 (단, 지원금액은 최대 4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분담율 : 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예) 장치비용이 35만원인 경우 28만원(80%) 지원, 7만원(20%) 자부담

보조금 지급절차



2개월 이내 보조금 신청 조문 삭제

- 기존 - 장치 장착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
- 변경 - 장치 장착일로부터 보조금 신청 기한 삭제
(단, '19년 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17.7.18 이후 장착한 경우에 한 함)

보조금 신청 편의성 확대

- 기존 - 보조금 신청 서류 상 도장 날인만 가능
- 변경 - 보조금 신청 서류 상 도장뿐만 아니라 서명도 가능

화물 위·수탁 차주의 보조금 신청 및 지급

위·수탁 차주가 운송사업자를 대리하여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보조금청구위임동의서」필요

기타 자세한 사항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 공지사항
“차로이탈경고장치” 검색 또는 우측 가운데 “TS CLICK” 확인

※ 보조금 지급 일정 및 차량 제원표 확인 등은 자동차 등록이 되어있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 바람

